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경찰연구관 이 기 수**

# 목 차

I. 서 론 .....	1
II. 경찰관 법정증언 개관 .....	3
1. 조사자 증언제도의 도입 .....	3
가. 제도의 도입 배경 .....	3
나. 제도 도입의 효과 .....	4
다. 관련 문제 .....	5
2.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와 수사환경의 변화 .....	7
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요청 .....	7
나. 자백중심 수사관행의 변화 .....	8
다. 경찰의 수사기능과 검찰의 공판 활동 강화 .....	9
라. 검찰의 이중수사관행 개선 및 경찰과의 협력 강화 .....	11
3. 증인으로서 경찰관의 법정증언 .....	12
가. 증언의 대상 .....	12
나. 경찰관 법정증언의 중요성 .....	13
III.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 .....	15
1. 경찰관 법정증언 현황 .....	15
가. 법정증언 빈도 .....	15
나. 법정증언 사건의 죄명 .....	16
다. 법정증언 내용 .....	17
라. 국민참여재판의 비율 .....	17

2. 소송주체들과의 관계 .....	18
가.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주체 .....	18
나. 법정증언 전 검사와의 사전면담 여부 .....	19
다. 증언 시 변호인의 질문 태도 .....	20
라. 변호인의 질문내용 .....	21
3. 사전준비 관련 사항 .....	22
가. 법정증언 전에 ‘법정증언 매뉴얼’ 참고 여부 .....	22
나. 법정증언 시 복장 .....	23
다. 법정증언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 .....	24
라. 교육이 필요한 분야 .....	24
4. 법정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과 환기 .....	25
가. 사건 송치 후 법정증언 하기까지 시간 경과 .....	25
나. 증언 및 답변내용에 대한 기억상태 .....	26
다. 증언 당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 .....	26
라.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억환기 방법 .....	27
5. 법정증언의 영향과 역할 .....	28
가. 증언기술 부족 등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 .....	28
나. 증언한 사건의 판결결과에 대한 인지도 .....	29
다. 경찰관 법정증언의 역할 .....	30
라. 출석부터 귀서까지 법정증언에 소요된 시간 .....	30
마. 법정증언이 평상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31
6. 기타(법정증언의 애로사항 등) .....	32
가. 법정증언 시 애로사항 .....	32
나. 법정증언 관련한 건의 .....	32
IV.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4

1.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	34
가. 법정증언 경험의 부족 .....	34
나. 경찰관 업무부담의 가중 .....	34
다. 법정증언 관련 교육의 미흡 .....	35
라. 법정증언 증가에 대한 대응전략의 부재 .....	36
2. 개선방안 .....	36
가. 법정증언 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	36
나. 경찰관 법정증언의 체계적인 관리 .....	39
다. 법원, 검찰과의 사전 업무 협의·조정기능 활성화 .....	41
V. 결론 .....	42
▣ 참고 문헌 ▣ .....	44
▣ 부록 ▣ .....	46

## 1. 서론

경찰관 법정증언은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찰관의 법정증언을 증가시킬 변화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07년 단행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모두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개혁의 대명제를 지향하고 있다.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나 공판준비절차의 도입은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규정이나 수사과정 기록제도,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명문화 등은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인권보장을 강화한 개혁안으로서의 면모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그 자체가 공판중심주의의 모든 것이 집약된 형태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법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적 가치와 감각의 반영, 법 이론과 현실의 괴리 극복, 법조비리 극복과 윤리성 제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이는 형사소송법과도 매우 관련 있는 것으로 이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직결된 수많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함께 도입된 것이다.

또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로 조사자 증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조사자 증언제도를 규정하여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도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백을

---

1) 한인섭, “경찰관 법정증언제도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9면 참조.

포함한 피의자의 진술을 법정증언이라는 방식을 통해 법정에 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하에서는 서류재판이 아닌 구두변론에 의한 배심재판이므로 검사작성의 조서보다도 경찰관의 증언이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시범실시 해오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 그 대상범위를 형사 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현재보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빈도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중대한 변화에 대비하여 경찰에서도 내부적인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형사사법개혁과 변화를 앞두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를 현 시점에서 파악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새로이 도입된 조사자 증언제도와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와 사법개혁이 경찰수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증인으로서 경찰의 법정증언에 대한 사항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실태파악은 2010년 전국의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할 것이며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 II. 경찰관 법정증언 개관

### 1. 조사자 증언제도 도입

#### 가. 제도의 도입 배경

기존 판례의 입장은 舊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동 조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법정증언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sup>2)</sup>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조사자 증언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서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고, 법정에서의 구두변론과 신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행법 하에서 경찰에서 자백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피의자의 불편함을 조사자 증언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고 수사기관 조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sup>3)</sup>이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sup>4)</sup>에서 명시적으로 조사자

---

2)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공1980, 12855);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공1994하, 2550);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공2000상,41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등.

3)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242면.

증언제도를 허용함으로써 피의자를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증언할 경우 그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이고, 조사자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증언을 하고 이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제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한 것이다.

## 나. 조사자 증언제도 도입의 효과

조사자 증언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필연적으로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를 수반한다. 조사자 증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주로 현장 출동경찰관의 초동조치, 검거경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내역 등에 대한 증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을 조사했던 조사경찰관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증언을 하게 될 경우 특신상황의 전제하에 증거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요인이 제도화된 것이다. 게다가 배심원이 존재하고 조서보다는 구두변론과 신문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하반기부터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실시된다. 시범기간 동안에 1년간 100건 전후<sup>5)</sup>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하여 왔지만,<sup>6)</sup>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

4)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5)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7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고 연평균 143.5건이다(2012년 법원행정처 자료)

6) 사개추위는 초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1단계 제도 시행 단계에서 100-200건이 적당할 것으로 보았다(한상훈, “사개추위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안시 쟁점과 결론,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2010, 54-55면.

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대상을 넓힐 경우 대상사건은 연간 1만 5천건 이상이 된다.<sup>7)</sup> 피고인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이 조정되겠지만 현재보다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것은 조사자 증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향후 경찰관의 법정증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사자 증언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증언하는 조사자는 법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증언에 임하게 된다. 즉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위증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시비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하게 되어 수사의 투명성 제고와 적법절차 준수를 촉진하며, 불필요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활성화되는 등 수사 방식이 인권친화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또한 경찰관도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피의자의 진술을 증언의 형태로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게 되어 수사절차상 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상대화됨에 따라 이중수사의 관행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sup>9)</sup>

## 다. 관련 문제

### 1) 특신상태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사자 증언제도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정진술을 할 경우 그 내용이 되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자 증언의 경우 수

7) 법률신문, “국민참여재판 확대…”(2011. 11. 24.) 기사 참고.

8) 법무부, 앞의 책, 243면.

9) 박종렬, 전명길,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36집, 2009, 298면.

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갈음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특신정황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논의되는 특신정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sup>10)</sup> 여기서 적시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판례는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sup>11)</sup>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견해<sup>12)</sup>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피의자신문에 적법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특신상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sup>13)</sup>가 대립하고 있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이나 자백은 그 재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진실성이 강하다는 데 근거를 둔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이다.<sup>14)</sup> 생각건대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여부가 전문법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sup>15)</sup>이 있지만 적법성이 준수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특신상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뿐 아니라 적법절차 준수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2) 조사자 증언과 보강증거의 문제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자백)을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백하였다는 증언은 사실상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한 보강증

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1057면.

1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12) 노명선·이완규, 582면; 손동권, 614면; 송광섭, 611면; 이재상, 569면; 정웅석·백승민, 238면.

13) 배종대·이상돈, 616면; 신동운 825면; 이영란 747면.

14) 신동운, 앞의 책, 1002면.

1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9, 570면.

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조사자 증언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법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자 증언제도와는 별도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과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sup>16)</sup>

## 2.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와 수사 환경의 변화

### 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요청

형사사법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형사사건의 실체형성을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조서에 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법정에서 경찰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일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공개된 법정에서 반복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그 동안 불신의 사유가 되어왔던 밀실조사 관행, 밤샘조사 등 진술의 임의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행들을 타파하고, 변호인 입회나 영상녹화 등을 확대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해야 하며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6) 류장만, “조사자 증언제도 연구 - 미국 실태를 중심으로”, 『법조』 2008, 5(vol.620), 322-333면.

17) 홍승희,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가 수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수사연구』, 2004(8), 29면.

## 나. 자백중심 수사관행의 변화

일반적인 종래의 수사관행을 보면, 우선 경찰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확보하고, 그 자백을 경찰조서에 일단 기재한다. 검사가 다시 한 번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 검찰조서에 기재한다. 수사시 얻은 증거는 일단 변호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한다. 법정에서 자백사실은 조서제출을 통해 법관에게 전달한다. 조서 및 관련증거를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전달한다는 등이다.<sup>18)</sup>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백율은 통상 90%를 넘는다.<sup>19)</sup>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자백의존도는 그만큼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자백위주의 수사도 앞으로 많은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앞서 밝혔듯이 국민참여재판은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투명성과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는 공판과정에서 철저히 공격받고 오히려 그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배심원이 존재하는 공판에서는 자백이 담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보다는 물적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중요시된다. 배심원들은 서류보다는 물적 증거와 증언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권을 제243조의 2<sup>20)</sup>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신문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하거

18) 한인섭,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2006), 540면.

19) 경찰청 수사국, 『범죄분석』, 통권 제31호, 2008, 830~831면. 이 자료에 따르면 자백율 77.1%, 일부 자백 17.7%를 합하면 경찰수사단계 자백율은 94.8%에 이른다.

20)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법적 권리를 환기시킬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고 법개정으로 인해 변호인 참여가 증가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sup>21)</sup> 그리고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기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인쇄되어 제시된 진술거부권의 고지방법이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진술거부권의 보장을 보다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증거의 중심을 자백위주에서 물증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피의자를 상대로 밀실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방식은 존속하기 어렵게 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시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들은 자백의존도를 벗어나 ‘과학성’ 과 ‘경제성’ 의 토대 위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법을 재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22)</sup>

#### 다. 경찰의 수사기능과 검찰의 공판활동 강화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증가한다면 경찰의 수사는 보다 정확하고 철저해져야 한다. 그 동안의 경찰수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것은 경찰의 책임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거기까지고 이후 기소나 재판단계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었으며 그 이후의 과정이나 결과를 알기도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3)</sup> 경찰의 미진한 수사나 적법절차원칙의 불완전한 준수는 검찰수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경찰의 수사과정은 공판정에서

21) 우리나라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입회비율은 1%에도 못미치는 0.08%(2010년 기준)라고 한다(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49면).

22) 한인섭, 앞의 논문(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545면.

23) 최응렬, 임유석, “국민참여재판 법정증언에 대비한 조사경찰관 역할의 변화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2009, 406면.

직접적으로 검증될 대상이 된다. 검찰은 구조적으로 수사와 공소업무를 담당하며 보다 큰 권한과 책임의식을 갖고<sup>24)</sup> 그것이 검찰수사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송치 이후에 부담을 덜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대부분 사건의 초동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수사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에 검찰수사보다도 자주 공판정에서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논하게 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경찰관 증인의 존재가 중요해지면 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 보조자 위치에 있게 된다면, 경찰의 증언은 검사지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리가 단순히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리를 법정에 증인으로 신문하는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법경찰관에게 직무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sup>25)</sup>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검찰과 경찰의 기능배분 문제뿐 아니라 양 기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검사의 공소유지자로서의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게 만들 것이다. 즉 배심원들로부터 유죄의 평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에만 의지할 수 없게 되고 공판정에서의 유죄입증활동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검사의 수사절차 관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사후적인 위법체크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sup>26)</sup> 공판활동 강화를 위해 자연스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4) 나영민, “공판중심주의와 이에 따른 경찰수사의 대응방향”, 『수사연구』(277), 2006, 32면.

25) 김태명,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방향”, 『형사정책연구』, 18(3), 2007, 835면.

26) 최응렬, 임유석, 앞의 논문, 405면.

## 라. 검찰의 이중수사관행 개선 및 경찰과의 협력 강화

조사자 증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기소를 전담한 검찰에서는 부득이 경찰조사에 이어 반복적인 이중수사를 하고 있었다. 사법자원의 낭비요, 국민에게는 불편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조사경찰관의 법정증언에 증거능력이 부여됨으로써 이러한 검찰의 이중수사관행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굳이 검찰에서 같은 수사를 하지 않아도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이 증거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경찰관들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검사와의 협력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송치 이후 사건의 진행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경찰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조사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증인으로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위증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변호사와는 대립적 관계로 만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조사경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법정증언자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건에 관심을 갖고 검찰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판정에서 공소유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은 더욱 긴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증인으로서 경찰관의 법정증언

#### 가. 경찰관 법정증언의 중요성

법정에서 증언은 물증보다도 더욱 중요한 증거로 꼽힌다. 물적 증거도 법정에서 ‘증언’의 형태로 현출되고 반대신문을 이겨낼 때 비로소 증거로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법관이나 배심원을 상대로 면전에서 하는 증언만큼 강렬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 증거는 달리 없다.<sup>27)</sup> 증인이 경찰관일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증인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길 주저하는 것은 법적인 부담이나 시간적·심적 부담으로 인해 어찌면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경찰관이 범죄현장에 처음 출동해서 목격한 정황이나 범인검거 경위 등에 대한 증언은 범인을 특정하고 범죄혐의를 확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필자는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경찰관이 초동수사 당시의 체험을 증언하는 것을 수회 관람하였다. 한 사례에서는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의자가 체포 당시 소지한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이고 있었는지, 그 손에 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증언이 혐의를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사실이 되어 초미의 관심사요 매우 중요한 증언이 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한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행직후 경찰관을 보고 숨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는 경찰관의 증언은 만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있어 양형의 핵심사유인 심신미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

27) 한인섭, “경찰관 법정증언제도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8, 51면.

다.<sup>28)</sup> 살인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죽고 없으므로 사건에 대한 증인이 더욱 존재하기 어렵고 이럴 경우 경찰관의 증언은 매우 절실하다. 경찰 증언이 없이 살인사건의 기소가 성공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sup>29)</sup>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그 증언의 신뢰성과 그것이 재판결과에 주는 영향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유명한 O.J 심슨 사건의 공판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경찰증언의 신뢰성 문제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증언했을 때 심슨의 변호인들은 그들이 ‘거짓말쟁이’ 이고 ‘인종차별주의자’ 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했고, 검찰이 압도적인 유죄증거의 우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슨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경찰 증언의 신뢰성 여부는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 나. 증언의 대상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법관이나 배심원들이 재판을 함에 있어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집중되어야 한다. 구두변론에 의한 직접심리와 집중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여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법정 증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관이 증언하는 경우 그 대상은 수사의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인 체험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범죄현장에서의 초동조치 상황, 피의자의 검거 경위와 검거 당시 상세한 정황, 관련 증거의 구체적인 수집 과정 및 절차, 피의자의 자백을 취득한 경위와 정황, 자백내용<sup>31)</sup>, 영장

28) 서울중앙지법, 2012. 5. 23. 선고 나2012고합275 판결.

29) Kevin Tierney, *The courtroom testimony* : A Policeman's Guide(funk & Wagnalls, 1970), 12면.

30) 한인섭, 앞의 논문(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529-530면.

31) 앞서 밝혔듯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조사자 증언에 포함된다. 그러나 조사자 증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판실무상 경찰관의 법정증언 시 그 내용이 피

집행 등 강제수사 과정의 체험, 임의동행이나 잠복 등 전 수사과정의 모든 체험이 법정에서 증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형사재판은 경찰증언이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 중 약 4/5정도에서 경찰이 증인으로 등장한다고 하며, 일부 사건의 경우 경찰은 감정인 (expert witness)으로 법정에 서기도 한다.<sup>32)</sup>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 재판의 시행에 따른 공판중심주의의 철저화는 곧 경찰의 법정증언으로서 역할의 대폭적인 확대라는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찰관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등장하는 일은 흔히 접하는 일상의 모습이 될 것이다.<sup>33)</sup>

---

고인의 진술이나 여부는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이뤄지던 경찰관 법정증언의 주요 내용인 현장출동 상황이나 검거경위와 정황 등에 더해 조사 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추가로 증언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므로 실무상 이를 구분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2) Kevin Tierney, 앞의 책, 15면.

33) 이동희,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73면.

### Ⅲ.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

경찰관의 법정증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2010년도에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 9월말까지 법정증언 경험자를 확인하고, 이들 중 2010년에 법정증언을 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1,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를 받은 경찰관 중 1,245명이 제출해 설문지회수율은 77.2%였다. 설문은 모두 28개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논하도록 한다.

#### 1. 경찰관의 법정증언 현황

##### 가. 법정증언 빈도

조사기간(2008.1.1. ~2010. 9.30.) 2년 9개월 동안 전체 경찰관 중에서 법정증언을 1회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모두 6,497명으로 조사되었다. 경찰관 전체인원 10만명 기준<sup>34)</sup>으로 볼 때 6% 정도의 인원이 법정증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법정증언 횟수는 1회가 74.9%였고, 2회 이상은 25.1%였다. 5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경찰관도

34) 경찰관 정원은 2010년 말 기준 101,108명(경찰청, 경찰백서, 2011, 361면).

1.7%가 있었다. 이 수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배심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과 비교해볼 때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부분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모든 공판에서 경찰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sup>35)</sup> 이런 상황에서 수사경찰관은 통상 1주일에 2일 가량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6)</sup> 국내 수사경찰인력이 18,000명<sup>37)</sup>이 넘는 상황에서 2년 9개월간 1/3 수준인 6,497명만이 법정증언을 경험한 것으로 매우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국민참여재판의 시범실시 기간으로 본격적인 시행기간이 아니라는 점과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sup>38)</sup>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향후 확대 실시될 것을 감안한다면 법정증언 경험을 한 경찰관의 수는 앞으로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나. 법정증언 사건의 죄명

<표 1> 법정증언 사건의 죄명 분포

죄명	공무집행 방해	폭력 행위등	교통 사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강도 절도	살인	사기 횡령등 경제범죄	기타
비율(%)	18.5	15.3	12.0	7.1	6.1	2.8	2.2	36

법정증언을 한 사건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가 18.5%를 차지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폭력행위등 사건이 15.3%

35) 류장만, 앞의 논문, 302면.

36) 변필건, “조사 경찰관에 의한 전문진술의 현출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9호, 2009, 165면.

37) 경찰청 자료(2012.6월)에 따르면 경찰 수사인력은 18,659명이다.

38)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01건이던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2007년에 989건, 2008년에 1,458건으로, 2009년에는 1,837건으로 최근 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를 차지했다. 폭력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경찰관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역시 예상할 수 있는 죄명이다. 그 다음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강도와 절도사건 등이었다. 살인사건은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이 전체 범죄건수 대비 0.1%<sup>39)</sup>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관 법정증언의 상대적 증언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법정증언 내용

<표 2> 법정증언 내용

증언내용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상황	범인검거 당시 정황	조사시 정황 (자백 등)	경찰관 피해정황 (공무집행방해등)	기타
비율(%)	27.4	22.4	16.6	7.7	25.9

법정 증언한 내용은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가와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경찰관이 법정 증언한 내용으로 현장출동 및 현장조치 상황이 27.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현행범 등 범인검거 당시 정황에 관한 것으로 22.4%를 차지했다. 이것은 검거 당시 피의자의 범죄실행 상태나 도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나 범죄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조사 당시의 정황이 16.6%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백을 할 당시 피의자의 태도나 정황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증언내용이 될 것이다.

## 라. 국민참여재판의 비율

경찰관들이 법정증언한 재판 중 국민참여재판은 24건(1.9%)이 해당되

39) 전체 범죄건수는 2010년 기준 1,784,953건인데 살인사건은 1,251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0.07%를 차지하고 있다(경찰청, 『경찰백서』, 2011, 141-146면 참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64건, 2009년 95건, 2010년에 162건에 달했음에도 증언한 경찰관은 24건으로 증언비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배심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증언을 했으면서도 기억을 정확히 못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보고자 했지만 대법원이나 경찰청 모두 경찰관이 법정증언한 공식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0)</sup>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법원과 경찰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2. 소송주체들과의 관계

### 가.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주체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검사가 37.3%, 변호인이 20.4%, 판사가 16.8%로 나타났고, 그 외 누가 증인신청을 했는지 모른 경우도 18.3%나 되었다. 범죄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에서 경찰관의 증언을 보다 많이 신청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반대편인 변호인 측에서도 경찰관을 상대로 수사의 적법성, 범죄혐의 입증의 소홀함이나 수사미진, 경찰관 증언의 모순 등을 공격하기 위해 의외로 적지 않은 수의 변호인이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이 법정증언에 임하기에 앞서 변호인의 변론전략에 대비할 필요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40)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언한 경찰관의 비율을 파악하고자 대법원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런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입수할 수 없었다. 경찰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 나. 법정증언 전 검사와의 사전면담 여부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하기 전에 검사와 전화통화를 포함해 사전면담을 한 경우는 전체의 14.6%에 달했다. 면담의 방법은 전화통화가 76.7%로 대부분의 면담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사전면담을 한다고 한다. 이 경우 면담의 내용은 주로 적법수사 여부, 증언할 내용과 보고서 기재내용의 차이점,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이나 조사당시 상황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등 증언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는 경찰관 개인의 기본적 경력이나 과거 독직폭행 전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다고 한다.<sup>41)</sup>

한편 법정증언 외에 검사의 사전면담까지 추가된다면 현재의 수사경찰관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불거지지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검사와의 사전면담과 관련해서는 면담의 생략의 포함해 전화나 화상면담 혹은 서류상 사전점검사항 검토 등과 함께 경찰인력 증원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다른 상황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미국이 검사와 경찰관의 협력관계를 전제로 면담을 실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검사와의 면담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고, 면담이 실시될 경우 법정에서도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에 의한 경찰과의 면담을 일종의 지휘로 받아들여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검사와의 면담은 경찰

41) 자세한 내용은 류장만, 앞의 논문, 302면 이하 참조.

관의 업무부담, 증언의 신빙성 탄핵, 공소유지의 효율성 등 이율배반적 내용들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 다. 증언 시 변호인의 질문태도

<표 3> 변호인의 질문 태도

변호인의 질문태도	평이한 질문과 확인	유도신문	적극적 반론 등 제기	진술옹호 등 호의적 태도	기타
비율(%)	45.9	27.2	14.5	2.5	9.9

변호인의 태도는 법정증언을 하는 경찰관에게 가장 부담을 주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부분이다. 설문에서는 의외로 변호인이 평이한 질문과 확인에 그쳤다는 비율이 45.9%로 높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답변내용의 대부분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니고 구두변론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기존의 법관재판에서 경찰관이 증언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유도신문, 경찰관 증언에 적극적 반론을 제기한 경우도 41.7%에 달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캐내기 위해 경찰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변호인의 변론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가진 자원보다 열세에 있는 변호인은 유죄입증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확률이 높은 조사경찰관의 증언이 유죄에 미칠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증언의 신빙성과 신용성에 대한 탄핵을 주요 변론전략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2)</sup>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찰관의 증언을 흐리게 하기 위한 반대신문(cross-examination)에서 그 증인(경찰관)을 비난하는 방법으로 증언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42) 경찰청, 『경찰관 법정증언 매뉴얼』, 기본(전문)매뉴얼 제71호, 2006, 10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3)</sup>

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관람한 바에 의하면 범죄혐의 여부를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증언할 경우 변호인은 분명히 경찰관의 수사상 흠결이나 진술의 모순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추궁하거나 공격하는 장면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인력이나 증거자료 확보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검찰보다 열세의 입장에 놓인 변호인이 경찰의 증언을 타깃으로 삼아 변론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라. 변호인의 질문 내용

<표 4> 변호인의 질문 내용

변호인의 질문 내용	기억·표현 오류 공격	유도성 또는 헛갈리는 질문	증언 신뢰성 문제제기	증인의 편견, 예단, 사상 등 공격
비율(%)	50.8	41.5	16.3	13.2

※ 설문 답변에 중복 답변 존재하여 비율의 합이 100% 초과함.

변호인이 증인인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정 항목에만 해당되지 않고 2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결과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찰관의 기억이나 표현의 오류 등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유도성 질문이나 헛갈리기 쉬운 내용을 질문하였다는 답변이 41.5%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경찰관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문제 삼는 등 방법으로 증언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16.3%를 차지했다. 그 외 미국 심슨재판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찰관 개인의 편견이나 예단, 사상 등을 공격한 사례도 13.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준비하면서 변호인의 변론과 관련해 꼭

43) 류장만, 앞의 논문, 306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변호인이 경찰관 증언을 탄핵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일관성 결여(inconsistency)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한다. 주로 paper work에 나타나는 사소한 오류(minor mistake)나 경찰관의 부주의(carelessness)를 이용하여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장 출동시간이 14:00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출동한 시각이 14:30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럴 경우 미리 경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답변준비 없이 증언할 경우 당황하게 되고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sup>44)</sup>

### 3. 사전준비 관련 사항

#### 가. 법정증언 전에 ‘법정증언 매뉴얼<sup>45)</sup>’참고 여부

경찰청이 일선 경찰관들의 법정증언을 돕기 위해 작성 배포한 ‘법정증언 매뉴얼’을 증언 전에 보고 참고했는지에 대하여 17.9%만이 참고했고, 참고한 이들 중 93.3%(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3.3%)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법정증언 매뉴얼이 일선 경찰관들의 법정증언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법정증언 매뉴얼을 참고한 경우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매뉴얼이 홍보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뉴얼의 배포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내용은 대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으로 적실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으나 매뉴얼이 작성된

44) 류장만, 앞의 논문, 309면.

45) 경찰청, 경찰관 법정증언 매뉴얼, 2006.

2006년도 이후 수정·보완할 내용들은 없는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법정증언 시 복장

법정증언을 위해 출석할 때 복장은 증언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법정증언도 공무수행의 일부이고 국가기관을 대표해 출석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사복정장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제복을 입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표 5> 법정증언 시 복장

복장	경찰근무복	사복정장	사복(평상복)
비율(%)	2.7	36.3	58.2

그러나 실제에서는 평상복을 입고 출석한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다. 필자도 수회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여 공무원의 증언을 지켜보았지만 정복이나 사복정장을 입고 출석한 공무원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 전문가의 경우는 사복정장을 입고 출석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출석한 공무원의 진술은 보기에 공무원으로 인식하기도 힘들 정도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했다. 특정인이 증언한다고 할 때, 진술 자체는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뿐이다. 오히려 증언의 태도와 인상이 그 증언 자체의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국민참여재판 뿐 아니라 법관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sup>47)</sup> 따라서 향후 법정증언 기법이나 매너 등을 교육할 때 증언 태도, 인상 등과 함께 반드시 복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6) 경찰청, 『경찰관 법정증언 매뉴얼』, 2006, 27-28면.

47) 한인섭, 앞의 논문(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533면.

## 다. 법정증언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

<표 6> 법정증언 관련 교육에 대한 입장

교육에 대한 입장	정기적 교육 필요	일회성 교육 필요	필요 없다
비율(%)	46.3	39.4	11.2

법정증언을 해본 경찰관들은 법정증언과 관련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8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것은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단순한 증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찰관 개인에게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교육이 필요한 분야

<표 7> 교육이 필요한 분야

교육 분야	증언기법	기억 환기 방법	법정증언 관련 기본적 사항(사전준비, 복장 등)	기타
비율(%)	48.6	10.4	19.0	22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증언기법으로 응답한 경찰관이 48.6%로 가장 많았다. 생소한 법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검사를 상대로 명확하고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언기법을 교육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법정증언을 위해 해야 할 사전 준비사항이나 복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들었고, 증언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10.4%가 응답하였다. 기타의 응답에는 변호사의 유도질문에 대응요령, 법정에서의 예상 질문, 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 등

이 있었다.

## 4. 법정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과 환기

### 가. 사건 송치 후 법정증언하기까지 시간 경과

사건을 처리한 후 장시간이 지나 법정증언을 하게 되면 기억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증언은 기억을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표 8> 사건 송치 후 법정증언 시까지 시간경과

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년 이상
비율(%)	13.3	29.5	38	15.7

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13.3%였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9.5%를 차지하였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는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도 15.7%나 차지했다. 증언을 하는 경찰관의 기억력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원활한 증언을 위해서는 미흡한 기억력의 문제를 보완해줄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나. 증언 및 답변내용에 대한 기억상태

<표 9> 증언 시 기억상태

기억 상태	기억과 망각 혼재	대체로 기억	망각부분은 메모 등 참고하여 기억 환기	기억나지 않고 환기시키지도 못함
비율(%)	41.8	40.8	13.3	1.4

사건과 관련해 기억에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은 40.8%였다. 반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다. 당연히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나 많은 사건을 매일 처리하는 경찰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정증언 전에 기억력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설문결과라고 할 것이다.

## 다. 증언 당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

<표 10> 기억환기 방법

기억 환기 방법	기록 복사 보관	KICS 활용	기억과 동료와 대화	개인 메모	기타
비율(%)	38.6	9.8	16.9	0.5	34.2

※ 기타 : 영상녹화, 송치서 사본 확인, 근무수첩, 복합적 방법 활용 등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앞두고 기억을 환기시킨 방법으로는 기록을 복사해 보관해둔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 없이 개인 기억과 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기억을 환기시킨 경우도 16.9%나 되었다. 그 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sup>48)</sup>을 활용해 기억을 환기시킨 경

48) 형사사법정보시스템(www.kics.go.kr)은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산시스템이다. 경찰의 경우 내부망을 통해 접속할 경우 사건담당자가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색할 수 있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사건의 처리내역이나 법원 판결문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우도 있었다. 기타의 방법에는 영상녹화나 송치서 사본 확인 등도 있었다. 저마다 기억을 환기시키는 나름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었지만 전체 경찰관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향후 경찰청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 라.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억환기 방법

<표 11>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억환기 방법

기억환기 방법	전체 사건 기록 보관	KICS 활용	조사과정 진술녹화	통일된 양식에 의한 기록유지
비율(%)	31.7	33.7	3.5	19.6

법정증언을 경험한 경찰관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억환기 방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하는 것으로 33.7%가 응답했다. 비슷한 비율로 전체 사건 기록 보관을 든 경찰관들도 31.7%에 달했다. 그 다음은 법정증언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통일해 기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 이후부터 최근까지 KICS는 계속 기능을 향상시켜 현재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한 모든 수사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이를 검색할 수 있고, 진단서 등 수사관이 작성하지 않은 증거서류의 경우에는 스캔을 통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가

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0년 이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당시보다 유용하게 기억 환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사법포털(KICS, [www.kics.go.kr](http://www.kics.go.kr))은 인터넷 망을 이용해 형사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사이트이다. 이를 이용하면 형사사건 관련 정보 조회 즉 사건진행상황 조회(경찰/검찰/법원), 벌과금 조회(조회에서 납부까지), 가납금환급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재판서(판결문) 열람 등 49종의 온라인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고, 교도소(구치소) 일반(화상) 접견 예약 등 법무부 민원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경찰관이 내부망을 통해 접속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는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 권장할만한 기억환기 방법으로 KICS의 활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경우에도 수사경찰관이 인사발령이나 근무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전 수사사건에 대한 법정증언을 해야 할 때에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미비점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사건 내용과 관련해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결국 기록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별도의 메모나 기록유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찰청 차원에서 KICS의 지속적 기능향상과 법정증언 관련 메모를 위한 통일된 양식이나 방법을 장구하여 이를 교육·권장할 필요가 있다.

## 5. 법정증언의 영향과 역할

### 가. 증언기술 부족 등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

<표 12> 증언기술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준다	조금 영향을 주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영향 없다
비율(%)	52.8	40.2	3.9

증언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법정증언 기술 부족 등의 사유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 중 절반이 넘는 52.8%는 증언기술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 40.8%는 조금 영향을 주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증언기술 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과반을 넘는다. 이것은 증언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증언기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애매한 질문, 모르는 질문 등에 대처하는 법이나 증언을 보다 명료하게 잘할 수 있는 법 등에 대해 사전준비나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증언한 사건의 판결결과에 대한 인지도

<표 13> 증언 사건 판결결과에 대한 인지도

인지 여부 및 인지방법	결과에 대하여 모름	유죄 공식 확인	무죄 공식 확인	유죄 비공식 확인	무죄 비공식 확인
비율(%)	70.9	10.9	2.4	11.7	1.1

※공식 확인: 판결문 확인 등 공신력 있는 매체 확인, 비공식확인 :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청취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당해 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에서 놀랍게도 70.9%는 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송치 이후 사건 처리 권한의 부재나 접근성의 제한, 많은 사건 처리와 현안업무의 산적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법정증언이 증가하여 일상화된다면 더 이상 사건 송치 후 무관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도입하면서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정증언을 앞둔 경찰관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산 상으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증언을 앞둔 경찰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해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송치 후 판결결과 등에 대한 확인과 인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다. 경찰관 법정증언의 역할

**<표 14> 경찰관 법정증언의 역할**

경찰관 법정증언의 역할	유죄입증에 결정적 기여	유죄입증에 일정 정도 기여	유죄입증에 기여하지 못함	무죄입증에 기여
비율(%)	21.9	68.4	4.6	1

※ 유죄입증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증언을 잘 못한 경우를 들 수 있고, 무죄입증에 기여한 경우는 수사나 체포가 잘못되었음을 진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신의 법정증언이 재판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찰관들은 유죄입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21.9%를 차지했고, 일정한 정도 유죄입증에 기여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외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증언을 잘 못해 유죄입증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경우도 4.6%가 있었고, 수사나 체포가 잘못되었음을 진술하여 무죄입증에 기여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증언 이후에 자신의 증언이 유죄입증에 기여했을 것으로 답한 경찰관들이 90%(일정 정도 기여 68.4 + 결정적 기여 21.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사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무죄입증에 기여한 경우도 파악돼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출석부터 귀서까지 법정증언에 소요된 시간

증언에 소요된 시간은 2-3시간이 3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반일 기준시간인 4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도 19.1%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표 15> 법정증언 소요시간**

소요시간	1시간 이내	2-3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비율(%)	13.7	39.4	25.3	19.1

소요시간을 많이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는 근무지인 경찰서와 관할 법원의 거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요시간은 향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검사와의 사전면담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이다. 미국의 경우 검사가 경찰관의 법정증언 전에 사전면담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2-3회, 중요한 사안일 경우는 6-7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49)</sup> 이럴 경우 경찰관이 갖게 되는 심적 부담이나 시간적 소요는 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마. 법정증언이 평상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표 16> 법정증언이 평상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영향 정도	당일 업무 전혀 못함	업무 수행에 별로 지장 없었음	당일 오전 또는 오후 업무 수행 가능
비율(%)	25.5	20.3	50.3

소요시간과 관련해 법정증언이 실제 경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준 영향에 대해서는 증언 당일 오전 혹은 오후 업무가 가능했다는 답변이 50.3%로 절반을 차지했고, 당일 업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5.5%나 되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답변은 20.3%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참여재판이 확대 실시 되기 전 시범 실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했듯이 미국의 경우 수사 분야 경찰관들은 주 2-3회 정도는 법정증언을 하는 것이 일상화

49) 류장만, 앞의 논문, 303면.

되었다고 하고 있고 정식 업무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정증언의 증가에 대비한 인력, 업무 조정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6. 기타(법정증언의 애로사항 등)

### 가. 법정증언 시 애로사항

<표 17> 법정증언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업무지장 초래	위증 등 증언에 대한 책임	사건 처리 후 기억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	피고 측의 보복 우려 등
비율(%)	13.4	11.3	58.4	2.2

경찰관들이 법정증언과 관련해 갖는 애로사항은 사건 처리 후에도 기억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58.4%나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종결했던 기존 관행은 이제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증언하고,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에서 경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상당수 경찰관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위증 등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 나. 법정증언 관련한 건의

경찰관의 법정증언과 관련해 경찰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나 건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 1) 법정증언 시 법률상담 및 지원

현재 실정은 자료 준비 등을 해당 경찰관 혼자서 모두 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두고 있는 소송전담 변호사 등을 경찰청에서도 확보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건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 2) 법원의 통지내용 구체화

법원에서 경찰관에게 증언을 위한 출석통지가 형식적이어서 사전준비에 애로가 있으므로 통지 시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기간도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야간근무 후에는 휴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증언일자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과 법원의 기관간 협의 시 꼭 논의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 3) 기타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할 경우 최소한의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법정증언 시 경찰관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법정에서 공개되는데 사소하지만 주소를 근무지로 대체하거나 비노출 증언을 할 수는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 외에 좀 특별한 내용으로 지구대나 수사부서의 경우 업무분장이나 성격상 경찰관 1인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2인 1조 또는 팀이 함께 업무를 처리한 사례에서 변호인이 증언하는 경찰관이 잘 모르는 부분 즉, 함께 처리한 동료의 업무에 대하여 허점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 필요한 경우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이 함께 출석하는 등의 방안도 경찰관의 요청으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 Ⅳ.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 가. 법정증언 경험의 부족

법정증언을 경험한 경찰관은 매우 적다. 조사기간인 2년 9개월간 6,497명이 경험했고, 2010년에는 9개월간 1,612명이 경험했을 뿐이다. 10만의 경찰인력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경찰관이 법정증언 경험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청에서 법정 증언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작성·배포한 법정증언 매뉴얼을 참고하지 않은 경우가 7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매뉴얼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증언과 관련한 교육의 부재, 매뉴얼 홍보부족 등은 실무상 법정증언 경험부족에 더하여 간접적인 경험의 부재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설문에 응한 경찰관들은 막연한 불안감 등을 갖고 교육의 실시나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형태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경찰관 업무부담의 가중

법정증언 시 경찰관의 시간소요를 보면 대체로 3시간 전후한 응답이 주를 이룬다. 하루 중 오전이나 오후 업무의 공백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시간의 소요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업무공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 때문에 하루 업무 전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업무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은 조사자증언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이 확대 실시될 경우 경찰관 면담을 실시<sup>50)</sup>하려고 할 것이다. 면담이 1회 증언 시 2-3회가 기본이고 중요한 사건은 6-7회<sup>51)</sup>까지도 한다고 가정하면 경찰의 업무부담은 오히려 주요 업무인 법정증언보다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면담을 생략하거나 필요최소한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면담방법도 대면보다 서면이나 전화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증언과 관련해 인력을 재산정하고 업무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야간근무를 한 경찰관을 휴무 없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 것도 검찰이나 법원의 직원이라면 실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경찰관의 휴무를 감안하여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이 법원과 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 다. 법정증언 관련 교육의 미흡

현재까지 경찰의 교육프로그램에는 법정증언에 관한 전문교육이 부족하다. 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위증 등의 부담을 안고 증언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법정증언 경험이 부족한 경찰관들은 교육을 통한 간접경험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증언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니고 경찰조직의 신뢰와도 관련되는 일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법정증언과 관련해 전문적 교육의 준비와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06년도에 제작된 경찰관 법정증언 매뉴얼도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50) 류장만, 앞의 논문을 참조.

51) 류장만, 앞의 논문, 303면.

## 라. 법정증언 증가에 대한 대응전략의 부재

법정증언을 하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을 증언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계하는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증언을 하다 증언기법의 부족이나 경험부족 등으로 위증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디부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찰관 개인이 알아서 별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정증언은 경찰관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인의 특정부터 검거까지 수사를 잘 했더라도 법정에서 경찰관의 증언이 부실하다면 유죄의 범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간에 투입된 수사력과 국가의 자원이 공허한 투입이 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실체진실의 발견도 멀어질 수 있다. 경찰관 전체의 법정증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현황을 모니터링 해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해 대응할 전략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2. 개선방안

### 가. 법정증언 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부족한 법정증언의 경험을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주는 것이다. 경찰관에게는 법정 자체가 낯설고, 증언의 지위도 익숙하지 않다. 게다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임했던 수사관의 입장에서 변호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수용하기도 힘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평상심을 잃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 냉철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표인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1) 교육의 내용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막상 법정증언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한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법정증언을 통지받았을 때 사전 준비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준비물은 무엇인지, 사건내용과 관련해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검사가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와 변호인이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당연히 예상 질문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법정증언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들이지만 사전 교육과 준비가 없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법정증언을 했던 경찰관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가장 많이 꼽았던 사항은 증언기법이다. 증언을 할 때 사실에 입각해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건내용에 대해 세밀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기록이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자체가 애매해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건 내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감추어진 의도를 갖고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 실수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사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은 경찰관을 화나게 하거나, 혼동시키기도 하고, 경찰관의 이름을 엉뚱하게 말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세부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밖에도 증언을 하는 태도나 표정 등은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들이다. 불필요하게 피고인을 향해 적개심을 보인다는지, 무리하게 유죄를 주장하려는 태도 등은 분명 증언의 신빙성을 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또한 증언하는 요령으로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쉬운 말로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하는 방식의 증언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sup>52)</sup>

기억 환기를 위한 방법도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자세한 활용법과 법정증언을 대비한 자료 저장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의 예상 질문을 토대로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메모를 통해 중요한 사항들은 기억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범죄관련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조사 시에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사내용, 기법 등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구대 경찰관의 경우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검거보고서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두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증거확보에 실패하고, 법정에서 수사소홀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변호인 측의 공격을 당하는 등 궁극에는 무죄로 석방되게 하여 수사의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52) 미국의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변호인들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로 묻는 사항들은 ①자백이 이루어진 상황, ②자백이 서면인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③자백이 녹음 또는 녹화되었는지, ④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후에 자백이 이루어졌는지, ⑤자백을 한 시각이 낮인지, 밤인지, ⑥자백을 할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는 어떠한지, ⑦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어떤 약속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⑧피고인의 자백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한다(Don Lewis, the Police Officer in the Courtroom, Thomas, 2001, p42. 구승모, “미국 공판정에서의 조사자 증언 활용 실무”, 해외연수검사논문에서 재인용).

그밖에 법정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증언이 잘못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련 법률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평상 업무수행과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 증거확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의 방식

경찰관의 인사발령, 근무변경과 신임 경찰관 채용,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회성 교육은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시적·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신임순경 교육, 승진 시 받게 되는 기본교육과 수사경찰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보충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 인사발령을 통해 법정증언을 해야 하는 부서로 이동한 경우를 대비한 인터넷 상시교육, 법정증언 매뉴얼의 추가 보급과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교육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나. 경찰관 법정증언의 체계적인 관리

### 1) 법정증언 전담부서의 설치

현재 경찰관 법정증언을 전담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가 모호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경찰관이 얼마나 증언하고 있는지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경찰관의 증언이 유무죄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의 법정증언을 전담할 부서를 명확히 하고, 수시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정증언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하는 경우 출석 전과 후에 일정 양식

에 의거 보고하도록 해 어떤 사건에 출석한 것인지, 증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사후 이를 자료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또 법정증언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전담해 수행할 부서가 필요하다. 그 형태는 지방청과 경찰청 단위에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 2) 전문상담관제 운영

법정증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정증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전문가를 지정해 전문적인 상담창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설문결과 경찰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법률상담과 지원이었다. 법정증언 통지를 받은 경우 사실상 해당 경찰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경험해보지 못한 법정증언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들은 자치단체의 소송전담 변호사를 예로 들며 그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법정증언과 관련한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고, 또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에 따라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악의적인 위증 고소<sup>53)</sup>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문제되었을 경우 소송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증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관을 지정·운영한다면 경찰실무 중 갑작스럽게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통지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53) 이것은 경찰관이 법정증언이 증가할 경우 예상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려가 될 수 있다(박종렬, 전명길, 앞의 논문, 303면).

## 다. 법원, 검찰과의 사전 업무 협의 · 조정기능 활성화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법원 및 검찰과 사전 업무 협의와 조정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게 법정증언의 증가는 곧바로 업무부담의 증가로 다가온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해 증언 경찰관과 사전면담을 실시하려고 할 것이다.<sup>54)</sup> 이것은 법정증언보다도 더 업무와 시간상의 부담을 경찰에게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법정증언 관련 업무에 대해 검찰과 사전협의를 통해 경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형사소송의 효율성도 견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찰관들은 법정증언을 통지할 때 사전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해주고, 통지내용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해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설문내용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증언 시 신분노출은 보복우려 등 경찰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정보의 보안유지와 비대면 증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증언 수당의 증액<sup>55)</sup>과 야근 후 휴무를 고려한 증언일시 선정 등은 위증 등의 심리적 부담과 가외적인 업무 증가 등 실질적인 직무상의 부담까지 갖게 된 경찰관의 입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법원과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찰관들이 보다 수월하게 법정증언을 해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4) 「경찰관 법정증언 매뉴얼」에서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현행 수사구조에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와 사전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55) 미국의 경우 법정증언을 하는 경찰관들은 통상적으로 1주일에 2회 가량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고 상당한 액수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변필진, 앞의 논문, 165면).

## V. 결 론

이상에서 경찰관의 법정증언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들을 고찰하고, 경찰관의 법정증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경찰관이 법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원활하게 법정증언을 하는 것은 단지 경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형사사건의 범죄혐의를 명확히 하고, 이제껏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형사사법개혁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통한 형사정의 확립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실시, 조사자 증언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에서 일선경찰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를 파악해볼 수 있었는데 여러 문제점들도 함께 노출되었다. 우선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법정증언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법정증언의 증가에 따라 경찰의 업무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법정증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증언을 위한 사건 관련 기억의 환기에 있어서도 통일된 방안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정증언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은 법정증언에 필요한 준비사항이나 예상 질문 등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증언에 요구되는 증언기법과 기억환기 방법, 위증죄 등 관련 법률지식 등에 대해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교육의 방법은 일회성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 신임경찰관 선발, 법규의 변경 등을 고려해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둘째, 경찰관의 법정증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는데 전담부서의 지정과 전문상담관제 운영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셋째, 경찰관의 법정증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법원, 검찰과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증언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경찰의 수사는 이제 온전한 책임성을 갖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경찰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정에서 경찰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완결성 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하고, 수사경찰관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핵심적인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 경찰관의 증언은 과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확대되어 일상화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모든 경찰관이 원활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한 축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lt; 참 고 문 헌 &gt;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9.
- 경찰청, 『경찰관 법정증언 매뉴얼』, 기본(전문)매뉴얼 제71호, 2006.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 경찰청 수사국, 『범죄분석』, 통권 제31호, 2008.
- 김태명,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방향”, 『형사정책연구』, 18(3), 2007.
- 구승모, “미국 공판정에서의 조사자 증언 활용 실무”, 해외연수검사 논문, 2009.
- 나영민, “공판중심주의와 이에 따른 경찰수사의 대응방향”, 『수사연구』(277), 2006.
- 류장만, “조사자 증언제도 연구 - 미국 실태를 중심으로”, 『법조』 2008, 5(vol.620).
- 박종렬, 전명길,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36집, 2009.
- 변필건, “조사 경찰관에 의한 전문진술의 현출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9호, 2009.
- 이동희,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 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최응렬, 임유석, “국민참여재판 법정증언에 대비한 조사경찰관 역할  
의 변화 방향”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2009.
- 홍승희, “공관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가 수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  
『수사연구』 , 2004.
- 한상훈, “사개추위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안시  
쟁점과 결론, 『국민의 사법참여』 , 경인문화사, 2010.
- 한인섭,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 『형사정책』 제  
18권 제2호(2006).
- 한인섭, “경찰관 법정증언제도에 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소, 2008.
- Kevin Tierney, *The courtroom testimony : A Policeman's Guide*  
(funk & Wagnalls, 1970).
- Don Lewis, *The Police Officer in the Courtroom*, Thomas, 2001.

<부록>

## 경찰관 법정증언에 대한 설문조사

※ 다음은 설문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2. 귀하의 수사경력은?  
①1년 이하 ②1-3년 ③3-5년 ④5-10년 ⑤10년 이상
3. 귀하의 계급은?  
①순경 ②경장 ③경사 ④경위 ⑤경감 ⑥경정
4.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는?  
①폭력팀 ②강력팀 ③지능팀 ④경제팀 ⑤생활안전과 ⑥교통과 ⑦기타

※ 다음은 법정증언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08년 1월 1일-2010년 9월 30일까지 귀하가 법정증언한 회수는?  
①1회 ②2회 ③3회 ④4회 ⑤5회-10회 ⑥10회 이상
2. 귀하가 법정증언한 사건의 죄명은?  
①살인 ②강절도 ③폭력행위등 ④사기, 횡령등 경제범죄 ⑤교통사고  
⑥기타(죄명기재: )





- ④헛갈리는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
- ⑤기타(내용 기재 : \_\_\_\_\_ )

13. 증언 경험 상 경찰관의 법정증언 기술 부족 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 ①그렇다    ②조금 영향은 주나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 ③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14. 증언한 사건의 판결결과는?

- ①판결문 확인 등 유죄 공식 확인    ②판결문 확인 등 무죄 공식 확인
- ③유죄 비공식 확인(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청취)
- ④무죄 비공식 확인(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청취)
- ⑤결과에 대하여 모름

15. 경찰관 법정증언의 역할은?

- ①유죄입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
- ②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도 유죄입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
- ③유죄입증에 기여하지 못함(기억이 잘 나지 않았거나 증언을 잘 못한 경우)
- ④무죄입증에 기여(수사나 체포가 잘못되었음을 진술한 경우)

16. 법정증언 전후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전화연락이나 면담 제의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 ①없다    ② 있다(16-1로 이동)

16-1. 어떤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가요?

- ① 변호인    ②피고인의 친인척    ③피고인의 지인    ④피해자쪽 관계인

16-2. 연락 또는 면담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 ①증언관련 부탁    ②증언관련 협박    ③증언관련 금품 등 제의
- ④기타(내용 기재: \_\_\_\_\_ )

17. 출석부터 귀서까지 법정증언에 소요된 총 시간은?

- ①1시간 이내 ②2-3시간 ③3-4시간 ④4시간 이상

18. 법정증언이 평상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 ①증언 당일 업무수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
- ②당일 일상업무 수행에 별 지장이 없었다
- ③증언 당일 오전 또는 오후 업무 수행은 가능했었다

19. 법정증언 시 복장은?

- ① 사복정장 ②사복(평상복) ③경찰근무복 ④기타(기재: )

20. 법정증언 시 증언출석 관련 비용을 지급받았는가요?

- ①즉석에서 증언비용 지급받음(액수 : )
- ②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
- ③증언비용 받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출장비 지급받음
- ④증언비용과 출장비 함께 지급받음 ⑤기타(해당시 기재: )

21. 향후 국민참여재판 확대실시 등을 감안할 때 법정증언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 ①정기적 교육 필요 ②일회성 교육 필요(기억환기법, 증언기법 등)
- ③필요 없다

21-1.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필요한 분야는?

- ① 증언기법 ② 기억환기를 위한 방법
- ③ 법정증언을 위한 사전준비 및 복장 등 기본적인 사항
- ④ 기타(필요한 사항 기재: )

22. 법정증언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있다면?

- ①업무지장 초래 ②위증 등 증언에 대한 책임

- ③사건처리 이후에도 기억을 유지해야하는 부담 ④피고의 보복 등 우려
- ⑤기타(내용 기재: )

23. 법정증언 관련 기억환기를 돕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 ①전체 사건기록의 사본 보관      ②형사사법포털(KICS) 활용
- ③법정증언 대상 사건의 진술녹화
- ④근무수첩이나 통일된 양식에 의한 조사상황 등 기록유지
- ⑤기타(의견기재: )

24. 법정증언 관련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해야할 사안이나 건의사항은?

※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연구보고서 2012-16

##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와 개선방안

---

---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요 섭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